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4

제출일자 : 2007. 11. 16.  
제출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사유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 나.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 다.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의 :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7. 10. 15 ~ 11. 4 (20일간)

- ▷ 고엽제후유의증회 사하구지회에서 공공시설 매점 등 운영 위탁권, 공원 등 입장료 감면 등의 조문 추가 요청
- ▷ 실효성과 형평성에 저촉되어 반영불가 통보(주민생활지원과-21275 2007.11.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현자(이하 “희생·공현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공현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현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현자의 공적 기재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2005.5.31 법률 7572호]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7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민주혁명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 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2.27, 1994.12.31, 1999.1.29, 2000.12.30, 2005.3.31>

[전문개정 1988.12.3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시행일 2008.1.1

**제4조 (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0.12.30>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